

국가 정책 · 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개발

김호석 외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호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을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자문위원 (가나다 순)

김중률 (환경부 기후미래전략과 과장)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실장)
문태훈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유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우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20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조 명 래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17년 12월 26일
발 행 2017년 12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192-1 935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김호석 외(2017), 「국가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개발」,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값 5,000원

서 언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제도’는 정부의 주요 정책·계획이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촉진하는 통합적 방식으로 수립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25일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2030의제」가 채택됨에 따라 SDGs를 포함한 의제 포함 사항의 이행은 이에 참여한 회원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촉진과 2030의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내 관련 정책 및 거버넌스의 재정비·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수립된 국정과제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 촉진과 2030의제 이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구상이 포함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강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요 국가 정책·계획에 대한 검토·심의 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 환경전략연구실의 김호석 박사, 김종호 박사, 이현지 연구원, 물환경연구실의 조을생 박사께 감사를 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환경부 김종률 과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종환 박사, 중앙대학교 문태훈 교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의 유현석 박사, 정우현 박사의 자문에도 감사를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조 명 래**

국문요약

2002년 개정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주요 정책, 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 기능은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라는 「의제21」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분야별 정책·계획이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립·변경되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이 기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으로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제도'로 자리 잡았으나,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조정되면서 그 제도적 실효성이 위축되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촉진 및 2030의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 계획이 실천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 전략 관련 정책·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법령·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검토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현행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검토제도는 법령의 제·개정 및 71개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출된 법령 혹은 계획에 대해 그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외에도 이 검토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한 이유가 되는 운영상의 이슈와 대내외적 여건 변화가 있었다: ① 각종 분야별 평가의 도입에 따른 '영향평가' 방식 검토의 한계, ② 해당 분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의 일관성 평가기준 추가 필요, ③ 2030의제 및 SDGs 관련 사항의 반영, ④ 지속가능발전 분야 간 상호연계성과 정책 정합성 평가기준 추가 필요.

본 연구에서는 향후 예정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강화와 현행 정책·계획 검토제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평가 방식을 '개별적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 기 수행된 분야별 평가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반에 걸친 적합성을 점검·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 분야별 검토, 평가 등과의 중복성 논란을 없애고 현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에서 요구되는 '정책 통합 및 조율'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범위는 법령의 제·개정과 함께 현재 71개로 정해져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 사회, 경제 등 지속가능발전 영역별 주요 전략과 행정계획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정책·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과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는 평가기준은 ①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과의 '일관성', ② 중·장기적 전망하에서 수립·변경되는 분야별 정책이나 계획이 관련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현안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유효성', ③ 검토 대상 정책이나 계획이 타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이나 목표와 상충 혹은 시너지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평적 정합성', 그리고 ④ 검토 대상 정책이나 계획이 관련 국제 합의·협약 혹은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지원하는지 평가하는 '수직적 정책정합성'의 네 가지이다.

주제어: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 정책 정합성, SDGs, 지속가능성평가

| 차례 |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3
3. 연구 내용	4
제2장 지속위 지속가능성 검토제도	5
1. 환경과 개발 통합	5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따른 검토제도	9
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검토제도	15
4. 국내 분야별 주요 평가제도	19
가. 환경분야	19
나. 경제·개발분야	23
다. 사회분야	28
제3장 정책·계획 평가체계 방향 설정	34
1. 평가체계 개편 필요성	34
2.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과 일관성	36
3. 2030의제 및 SDG 반영	38
4. 정책 정합성 평가 필요	40
5. 해외 사례: 핀란드 입법평가위원회	42
제4장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46
1. 기본구조	46
2.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범위	48

가. 대상 정책·계획 범위 설정	48
3. 정책·계획 평가기준	53
가. 평가기준의 설계	53
나. 국가 지속가능발전 일관성	56
다. 지속가능발전 정책 유효성	57
라. 정책 정합성(policy coherence)	58
 제5장 결론	 62
 참고문헌	 65
 Abstract	 68

| 표차례 |

〈표 2-1〉 지속가능발전 국가 전략의 주요 구성요소와 정책 통합	6
〈표 2-2〉 환경대통령 선언 실천계획의 7대 정책과 및 22개 세부과제	8
〈표 2-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하에서의 검토 범위 비교	16
〈표 2-4〉 검토 대상 중·장기 행정계획(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별표)	17
〈표 3-1〉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주요 평가제도	35
〈표 4-1〉 SDG 목표별 국내 관련 전략, 계획	49
〈표 4-2〉 법령 및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표	53

| 그림차례 |

〈그림 2-1〉 국가 중장기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절차	14
〈그림 3-1〉 현행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37
〈그림 3-2〉 UN HLPF의 '자발적 국가리뷰'(VNR)의 이행 검토 사항 예시	39
〈그림 3-3〉 UN DESA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간 상호연계성 분석 예시	40
〈그림 3-4〉 SDG 체계에서 목표 간 상호연계성 사례	41
〈그림 3-5〉 핀란드 입법평가위원회 평가의견서 샘플	43
〈그림 3-6〉 핀란드 입법평가위원회 정부 제안서 평가 절차	44
〈그림 4-1〉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에서 정책·계획 평가의 역할 정의	47
〈그림 4-2〉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검토를 위한 평가기준	54
〈그림 4-3〉 기존 검토항목과 새로운 평가기준 비교	55
〈그림 4-4〉 SDG 체계에서의 수평적 정합성 사례: 물-에너지-식량	59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경제-환경-사회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은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특히 지난 2015년 채택된 2030의제는 목표 간 상호연계성(interlinkages)을 고려하여 17개 SDGs가 균형 있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달성되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¹⁾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환경-경제-사회 통합적 정책의 기본원칙을 도입한 이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시행,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 설립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입각한 통합적 정책 운영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에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정과제 61에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재정립을 실천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현행 환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지속위를 녹색성장위원회와 통합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여 경제·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적 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속위가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국가 전략과 경제·사회·에너지·환경 등 관련 정책·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국정과제 61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법령·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지속가능성 평가 확대 및 기관평가 반영 등도 세부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1) “We are committed to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its three dimensions -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 in a balanced and integrated manner.”

이미 국내에서는 다음의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사항 등에 대한 검토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위의 검토 기능은 2000년 지속위 설립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검토 및 평가 방법론 개발을 위해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사전검토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2)와 「법령 및 중장기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방안 연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8a)와 같은 연구가 수행되었다.²⁾

국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의 발전과 SDGs의 등장이라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이번에 발표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재정립 및 지속위 위상 강화 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지속위 검토 기능의 전면적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는 앞으로 추진될 2030 국가 지속가능발전 국가비전 및 목표, 이행전략, 평가지표 수립 등 실천과제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2조, 제15조 참고.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 전략 및 분야별 국가 정책·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에 적용 가능한 평가기준 개발

향후 지속위 위상 및 역할 조정에 따른 현행 ‘법령·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기능의 개편 방안 및 이에 활용 가능한 평가체계 개발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이행 평가, 국가 SDGs 이행 평가 등 국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평가 개선방안 제시

2. 연구 범위

신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이행할 분야별 국가 정책·계획 수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지원, 미세먼지 문제 해결,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시스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될 것인데, 이들 정책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기능 강화’ 및 ‘부처 및 분야 간 정책 정합성 제고’를 위해 검토·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재정립 및 관련 법·제도 개편이 추진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국가 SDGs 이행전략 수립’, ‘지속가능성 분석·평가제도’ 마련,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작성’ 등도 예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하여 활용 가능한 ‘국가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존 지속위의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평가기준의 개편과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확대를 포함한다.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속위 심의 대상은 법령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외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평가체계의 적용 범위는 현행 지속위 검토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 및 중장기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향후 지속위의 사전검토 및 심의 대상이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계획이나 분야별 정책으로 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평가체계는 이후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이나 지속위의 위상과 역할 조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 정한 심의 대상보다 넓은 범위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지속위 지속가능성 검토제도 개관과 새로운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방향 설정, 그리고 개발된 평가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지속가능성 검토제도의 도입 배경,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 지속가능성 검토제도는 의제21의 이행 및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그 배경으로 하는 지속위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근거 법령이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이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바뀌면서 검토 대상과 범위가 조정되었다.

제3장에서는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평가체계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향후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SDGs 이행을 고려할 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새로운 평가요소를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새로운 평가체계의 기본구조와 대상 정책·계획의 범위, 그리고 범주별로 구분된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였다.

제2장

지속위 지속가능성 검토제도

1. 환경과 개발 통합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지속가능발전을 국제협력과 국가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공식 채택한 국제회의이다. 178개국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27개 원칙과 ‘의제 21’(Agenda 21)이 포함된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하 ‘리우선언’)이 채택되었다.

리우선언은 그 원칙에서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을 위해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통합적 부분이어야 하며 그와 별도로 고려될 수 없다”³⁾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국가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기본 사항들을 의제21 제8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의제21 ‘제8장. 환경-개발 통합적 의사결정’의 목표
 - (8.2) 정책, 계획 및 관리 단계에서 경제, 사회, 환경 요인을 통합하며, 환경과 개발 모두가 핵심 요인으로 반영되도록 경제적·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조정 또는 근본적으로 재편성이 필요
 - (8.4)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 모든 부처의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고려의 통합적 반영
 - 의사결정의 기초로서 장기적 전망과 상호 부문적 접근을 반영하는 국내 정책을

3)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annot be considered in isolation from it.”

채택. 여기에는 개발과정에 연관된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환경문제상의 연관을 고려하고 있음

〈표 2-1〉 지속가능발전 국가 전략의 주요 구성요소와 정책 통합

범주	OECD	UN DESA
정책 통합	· 경제-사회-환경 목표의 통합 · 포괄적이고 통합적 전략	· 경제-사회-환경 목표의 통합 · 부문 간 연계
세대간 시간 범위	· 장기 비전에 대한 합의 도출	· 공유된 전략과 비전 개발 · 장단기 전략과 연계
분석과 평가	· 포괄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에 기초한 전략 수립 · 기존 절차 및 전략에 기반	· 적절한 기술적·경제적 분석에 기초한 전략 수립 · 기존 메커니즘과 전략에 기반
조정 및 기관	· 고위급 정부 공약과 영향력 있는 주무 기관 선정	· 전략을 주도한 강력한 기관 혹은 기관 그룹 선정
지방·지역 거버넌스	· 국가와 지방을 연계	· 국가-지역-지구 단계의 연계
이해당사자 참여	· 효과적 참여를 보장 · 사람 중심 전략의 개발	· 모든 이해당사자의 정보 접근 보장, 투명성, 책임
지표와 목표	· 목표와 함께 재정적 우선순위 설정	· 현실적이고 신축적인 목표에 기반을 둔 전략 수립
모니터링과 평가	· 모니터링, 학습 및 개선 절차를 포함	· 검토, 팔로우업, 평가 및 피드백을 위한 통합적 메커니즘

자료: OECD(2006), p.13.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직후 같은 해 7월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를 구성하여 리우선언을 포함한 각종 국제협약 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을 담당케 하였다.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는 ‘지구환경실무대책회의’, ‘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 그리고 ‘지구환경대책기획단’ 등 3개 산하기구를 두고 있었는데, 1995년 6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었다. 국가별 의제21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의제21」 제37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실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바로 이 대책회의에서 1994년 4월 총4부 40장으로 구성된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작성이 결정되었으며, 이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96년 10월 유엔에 제출되었다.

의제21 실천계획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국민이 이행하여야 할 중장기 과제를 분야별로 제시한 것이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국가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총체적 평가를 병행 추진할 것임”⁴⁾을 그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1996년 3월에 김영삼 대통령은 “자연과 인간의 연대를 회복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환경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5대 기본원칙”이 담긴 「환경복지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때 발표된 5대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⁵⁾

- 원칙 1: 「정부 수범」의 원칙
- 원칙 2: 「환경과 경제의 통합」 원칙
- 원칙 3: 「공동책임과 생활 속의 실천」 원칙
- 원칙 4: 「사전예방 및 오염자 부담」의 원칙
- 원칙 5: 「남북한 환경협력과 전지구적 공동협력」의 원칙

같은 해 4월 환경부는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해 7대 정책과제, 22개 세부과제 및 83개 단위사업이 포함된 『환경대통령 선언 실천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어 5월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선언의 범정부 추진을 위한 「실무계획 작성 방향」을 확정하였고, 관계 부처 계획이 종합 조정된 『환경대통령 선언 실천계획』이 6월에 최종 발표되었다.⁶⁾

4) 대한민국(1996)

5) 대통령 비서실 보도자료(1993.3.21.).

6) 환경부(1996).

〈표 2-2〉 환경대통령 선언 실천계획의 7대 정책과 및 22개 세부과제

7대 정책과제	22개 세부과제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	환경친화적 생산구조로 전환 환경친화적 소비행태의 구축
환경자치제의 확대	자치단체의 환경관리 역량 제고 민간 환경단체와의 협력 강화
환경교육의 강화	학교 환경교육의 강화 사회 환경교육 강화 녹색환경 실천운동의 확산
환경기준의 선진화	선진국 수준의 환경질 확보를 위한 기준 강화 환경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질에 대한 관리 강화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수질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상수도 관련 시설의 확충·정비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환경투자 재원 확보
환경관리기능 강화 및 효율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구현 정부의 환경관리 기능 통합·조정 환경분쟁의 조정기능 강화 환경분야 정보화 촉진
환경외교의 강화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의 참여 동북아시아 국가 등과의 환경 협력 한반도 환경 공동체 추진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따른 검토제도

UN의 권고에 따라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여러 나라들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국가적 논의를 주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는 협의 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의정부는 2000년 환경의 날에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발표하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이를 통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속위의 설치 목적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이고, 근거 법령은 2000년 8월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이다. 이 규정에서 제시된 설립 당시 지속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설립 당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주요 기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이행대책 및 대응전략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설립 이후 지속위 기능은 그 범위가 점차 강화·확대되었는데, 2003년 7월 위원회 규정 개정 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심의’하는 기구로 그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범위 역시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 11월에 다시 개정된 규정에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사항”이 심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환경-경제-사회 세 측면이 모두 반영되게 되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정 직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제1조 (목적)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2조 (기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 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물·에너지 대책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사항
4.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이행대책 및 대응전략에 관한 사항
6.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지속위의 주요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기능은 2002년 개정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처음 포함되었다. 이는 지속위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⁷⁾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⁸⁾

2002년 6월 개정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는 위원회 통보 대상 주요 정책과 계획의 범위를 “①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중·장기계획, ② 제1호의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광역개발계획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계획, ③ 기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된 주요 정책 및 계획”으로 정하고 검토 대상 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검토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2003년 개정에서는 통보 대상 주요 정책과 계획의 범위를 별표로 제시된 중·장기 계획으로 수정하였다. 정책·계획 검토를 포함한 지속위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15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7) 2002년 6월 3일 시행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정·개정문

8) 대통령령 제17621호

-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주요 중·장기계획은 별표와 같으며, 그 통보시기는 당해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에 협의를 요청하는 때로 한다.
- ④ 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계획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년 개정 시 지속위 검토 대상이 되는 40개 중·장기계획이 별표로 첨부되었다. 이는 2006년 개정 때 다음과 같이 44개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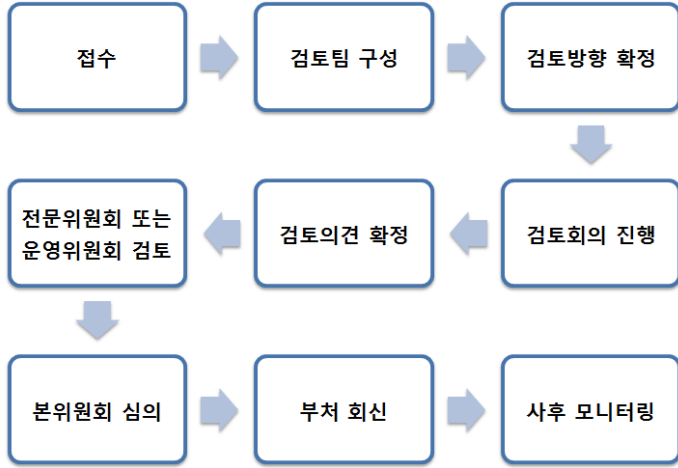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2008.1.20. 시행)에 따른 검토 대상 중·장기계획
 1.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
 2. 「원자력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3.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4.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5.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계획
 6.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

시책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3.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
1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15.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16.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교육·홍보시책
1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18.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19.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
20.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기본계획
2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2. 「폐기물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24.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2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
2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30. 「수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31.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32. 「도로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
 33. 「하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34. 「지하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35.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37.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38.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39. 「연안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계획
 4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 계획
 4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42. 「철도건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중 동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계획
 44.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주요 정책 및 계획
- 검토 절차⁹⁾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중장기 계획 수립·변경 통보
 - ②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청(위원회→소관 부처)
 - ③ 중장기 계획의 수립·변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본위원회)을 거쳐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의 검토의 견을 통보(위원회→소관 부처)

9)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6).



〈그림 2-1〉 국가 중장기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절차

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검토제도

2005년 6월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높아지는 지속가능발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 “환경친화적인 경제구조 정착”, 그리고 “환경 보전을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경제·사회·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을 발표하였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그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운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¹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07년 제정되었다.

기본법은 전체 5개 장,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속위의 정책·계획 검토 기능에 대한 내용은 제11조 ‘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서 규정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구성	
<p>제1장 총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기본원칙 <p>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 제5조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 제6조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 제7조 이행계획의 협의·조정 · 제8조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 제9조 추진상황의 점검 · 제1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 제11조 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 제12조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p>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제14조 지속가능성보고서 <p>제4장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 제16조 국가위원회의 기능 · 제17조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 제18조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 제19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p>제5장 보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 제21조 교육·홍보 등 · 제22조 국내외 협력 등

기존 지속위 규정에 따른 제도와 크게 달라진 점은 검토 대상이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변경’에서 ‘법령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으로 확대되었다는 것과

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문

통보된 검토 결과를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아래 표는 각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하에서의 정책, 계획 검토 관련 조항을 비교한 것이다.

<표 2-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하에서의 검토 범위 비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2008.1.20. 시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08.2.4. 시행)
<p>제15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p> <p>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u>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주요 중·장기계획은 별표와 같으며, 그 통보시기는 당해 계획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하는 때로 한다.</p> <p>④ 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계획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⑤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⑤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u>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u></p>

이와 더불어 국가 지속위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별도로 추가하였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 ①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정 시 지속위 검토 범위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으로 규정되었다. 처음에는 73개 중·장기 행정계획이 지정되었다가 이후 조정되어 현재는 71개로 되어 있다.

〈표 2-4〉 검토 대상 중·장기 행정계획(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재수급기본계획 · 공원기본계획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과학기술기본계획 · 관광개발기본계획 · 관광진흥장기계획 · 광역개발계획 · 광역도시계획 ·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국토종합계획 ·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 농어촌보전복지기본계획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 수도정비기본계획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 습지보전기본계획 ·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어장관리 기본계획 ·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 연안정비기본계획 · 연안통합관리계획 · 원자력진흥종합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수도종합계획 · 전력수급기본계획 · 주택종합계획 ·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 지역발전 5개년계획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 항만기본계획 ·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 댐건설장기계획 · 도로건설·관리계획 ·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 보육계획 · 사방사업기본계획 · 산림기본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자원순환기본계획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	---	---

4. 국내 분야별 주요 평가제도

가. 환경분야

▣ 전략환경영향평가

목적	-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해당 계획의 환경적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
법적 근거 / 관련 법	- 「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 「환경영향평가법」
평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구분 ·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① 구체적인 개발 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과 ②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으로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평가 항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나)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 개발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연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p>관련 부처/기관</p>	<p>- 환경부</p>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
법적 근거 / 관련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평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영향평가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 에너지 개발 ·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수자원 및 해양 개발 ·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평가 항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 주변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지 검토 -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조사 및 대상 지역과의 관련성 - 침수재해 발생 가능성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개발계획 현황조사 및 대상 지역과의 관련성 - 대상 지역 내 하천, 소하천의 존재 여부 및 정비계획 수립의 관련성 -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대상 지역의 입지 적정성 분석 - 대상 지역 내 지진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 사면 및 지반재해 발생가능성과 저감대책
관련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 기후변화영향평가

목적	- 국가·지역 단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 보공유 및 기후 리스크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안 모색 ¹¹⁾ -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적응 목표 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효과적 자원 배분
법적 근거 / 관련 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8조
평가 대상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평가 항목·범위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 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물,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관련 부처/기관	- 녹색성장위원회

■ 자연환경영향평가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 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
법적 근거 / 법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¹²⁾
평가 대상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시행령【별표1】1에서 규정(17 개 분야 64개 사업) · 자연환경·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큰 개발사업 · 공원지역 등에서 시행될 사업으로 환경적으로 민감한 사업 · 환경영향이 장기적·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변화예측이 곤란한 사업 · 공단조성 등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이 항구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 해안매립 등 불가역적인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평가 항목·범위	- 자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 및 내용 · 기상: 기온, 일조시간 등 기상변화, 수립대 제거 등에 따른 국지기상 · 지형·지질: 지형변화, 토지·사면의 안정성, 지반침하 여부, 표사·퇴사변화 · 동·식물상: 육상 동·식물, 육수 동·식물, 해양 동·식물 · 해양환경: 해양수질오염도, 해역이용 상황, 수자원이용 상황 · 수리·수문: 댐수위, 유량
관련 부처/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 박기령(2014), p.86.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검색일: 2017.11.23.

나. 경제·개발분야

▣ 규제영향분석

목적	-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규제수단과 대안을 탐색하여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유도
법적 근거 / 관련 법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평가 대상	- 행정규제의 범위(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평가 항목·범위	- 경제·사회적 비용과 편익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집행 가능·필요 여부 - 규제의 적정성: 문제의 심각성, 국내외 사례, 국제적 기준 등 고려 - 이해관계자 협의 - 규제집행의 실효성
관련 부처/기관	- 규제개혁위원회

▣ 예비타당성조사

목적	-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법적 근거 / 관련 법	- 「국가재정법」 제38조
평가 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으로 ·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평가 항목·범위	- 경제성 분석 · 수요 추정 및 편익 산정 · 모든 경비 항목 및 총 비용 · 경제사회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수익성 분석 - 정책성 분석 · 정책의 일관성 · 사업 준비 정도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고용효과 · 환경적 가치 ·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낙후도 개선 · 지역경제 파급효과 · 고용유발 효과 - 기술성 분석 ·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기술개발의 성공 가능성 ·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중복성
관련 부처/기관	- 기획재정부

▣ 국토계획평가

목적	- 균형 있고, 경쟁력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라는 국토계획 기본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법적 근거 / 관련 법	- 「국토기본법」 제19조
평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계획·지역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종합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 기간시설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광역교통기본계획다.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항만기본계획 ·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 항공정책기본계획 · 공항개발 증장기 종합계획 · 국가물류기본계획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 댐건설장기계획 - 부문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종합계획 중 10년 단위의 계획 ·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 산촌진흥기본계획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산림기본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 · 연안통합관리계획 · 연안정비기본계획 · 해양환경종합계획 · 관광개발기본계획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평가 항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역개발, 인프라 정비, 지역자원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 가치화, 광역적 연계발전방안 - 지역 간 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발전지역의 인구 및 일자리 증대, 접근성 제고, 주거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 발전지역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전략, 시설이나 사업선정 시 고려 등 대상 계획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선택 -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확충 · 주요 검토항목으로 교통·물류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접근성 제고, 교통·물류비용 절감,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국토정보화 제고,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향상, 시설물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국토자원으로 토지자원, 수자원, 생태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식량자원, 광물자원, 해양자원 -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 탄소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대응 · 국토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환경성 검토 -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 평가 대상 국토계획이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및 유관 계획과의 목표 및 전략, 관련 계획내용에 부합 여부 · 상위 및 유관 계획은 대상 계획의 범위 및 특성에 따라 국토 및 지역계획, 교통·물류, 산업, 관광, 환경, 해양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p>관련 부처/기관</p>	<p>- 국토교통부</p>

▣ 교통영향평가

목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6항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법적 근거 / 관련 법	- 「도시교통촉진법」,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평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지역 및 사업)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¹³⁾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평가 항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평가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기관이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교통영향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 후 1년 이내·5년 후 및 10년 후에 예상되는 가장 인접된 사망의 5개 교차로 이상의 범위에 대한 교통영향 · 지방교통영향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 후 1년 이내 및 5년 후에 예상되는 가장 인접된 사망의 3개 교차로 이상의 범위에 대한 교통영향 -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지역 및 사업)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관련 부처/기관	- 국토교통부/특·광역시 및 도/교통환경연구원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검색일: 2017.11.23.

다. 사회분야

▣ 고용영향평가

목적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나 법·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조치들이 본래 의도한 고유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권고를 제시 ¹⁴⁾
법적 근거 / 관련 법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평가 대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사업 · 국회가 그 의결로 고용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정책
평가 항목·범위	- 해당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고용과의 연계성 및 고용창출의 경로 -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되거나 발생한 일자리의 증감 -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관련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질 변화 - 일자리의 증감이나 고용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관련 부처/기관	- 고용노동부

14) 고용영향평가센터, '고용영향평가 소개', 검색일: 2017.11.23

□ 균형발전영향평가

목적	-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¹⁵⁾
법적 근거 / 관련 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재정법」 제8조6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조
평가 대상	-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 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음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평가 항목·범위 ¹⁶⁾	- 전체 사업 종합평가 - 분과별 상세평가 · 균형지표 및 연차별 목표의 설정 · 균형지표의 목표 실행계획 및 달성 여부·가능성 · 당해 사업의 균형발전 기여도 - 수도권 입지 신규사업 평가 · 수도권 입지 사유 · 수도권 집중 영향
관련 부처/기관	- 기획재정부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시행령’, 검색일: 2017.11.24.

16) 변세일(2008)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기 ¹⁷⁾ 위함
법적 근거 / 관련 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 제5조, 제6조
평가 대상	- 제5조(분석평가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함 ·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평가 항목·범위	-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 성별 수혜분석 ·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 부처/기관	- 여성가족부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검색일: 2017.11.24.

▣ 건강영향평가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사업의 시행이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로 인해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¹⁸⁾ - 인체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과 건강불평등을 최소화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법적 근거 / 관련 법	- 「환경보건법」 제13조,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 ¹⁹⁾
평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함 - 에너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 용량이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 -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시설의 설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처리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이상인 매립시설, 최종처리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이상인 매립시설, 중간처리시설 중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kl 이상인 설치사업.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함
평가 항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 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관련 부처/기관	- 환경부

18)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건강영향평가', 검색일: 2017.11.23.

19)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보건', 검색일: 2017.11.23.

▣ 문화영향평가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의 문화화’를 통해 문화 가치의 전 사회적 확산 지원 -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
<p>법적 근거 / 관련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²⁰⁾
<p>평가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p>평가 항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또는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력이 큰 정책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차원 또는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중요도가 큰 정책(예: 국정과제, 지자체 단체장 주요 시책사업 등)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또는 시설조성사업 ·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 또는 반복적으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 국민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미칠 정책 및 계획 등 - 문화적 가치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큰 계획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요소와의 결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거나, 문화적 요소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계획 및 정책(예 : 도시재생사업,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공공외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사회통합형 탈북민 지원사업 등)
<p>관련 부처/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기본법 시행령’, 검색일: 2017.11.23.

▣ 인권영향평가²¹⁾

목적	- 정부나, 조직, 기업들이 좀 더 인권에 책임을 가지고, 인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 조직, 기업들의 계획과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방법
법적 근거 / 관련 법	- 국가 차원의 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각 지자체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²²⁾ 」가 제정되어 있음
평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와 규칙, 헌장 등 자치법규 제·개정 · 정책 분야별 기본계획 · 일정 재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 · 재개발과 퇴거 등 주거권과 관련 사업 · 공공건물과 도로, 교통, 공원 등 공공시설 관련 사업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거나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업
평가 항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 자체평가(체크 리스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 특정평가(조사분석)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세대 미만의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하는 사업의 계획(재개발 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포함, 100세대 이상의 주민이 퇴거하는 사업 계획의 경우 아래의 다른 인권영향평가 방식 수행) · 장애인, 아동, 여성, 다문화 등 인권취약계층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 예산 사업, 계획 및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 도로, 건축물 등 공공시설 건축 사업 및 계획 · 구청장, 인권담당 부서장,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외부 전문기관 평가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세대 이상 대규모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하는 사업의 계획 · 구청장, 인권담당 부서장,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부처/기관	- 관계 기관의 장

21) 광명시민인권센터(2017.9.19.).

22) 현재 조례 지정 지자체는 총 16개로 광명시 광주광역시 광주 광산구 광주 동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시, 서울 동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은평구, 경기 수원, 울산 울주, 인천 남구, 전라남도, 충남 아산, 충청남도, 제주도

제3장

정책·계획 평가체계 방향 설정

1. 평가체계 개편 필요성

기본적으로 각 부문의 정책이나 계획은 부문별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시행된다. '통합적 정책' 접근은 이러한 부문별 정책·계획이 '부문 간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부문별 정책적 노력이 타 부문을 내생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으로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위의 현행 지속가능성 검토제도는 '모든 부처의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고려의 통합적 반영'이라는 의제21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부분별 법령이나 중·장기 행정계획을 최종 시행 이전에 '검토'(review)함으로써 타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assessment)하도록 하고 있다.

현 제도의 근본 취지인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검토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적 영향평가'(ex ante impact assessment)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영역에서 영향평가는 '일련의 정책이나 사업이 환경, 건강, 문화, 사회, 경제 등 평가의 목적이 되는 대상의 정량적·정성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영향평가는 평가 시점에 따라 '사전적 영향평가'와 '사후적 영향평가'로 구분되는데, 환경이나 건강 등 비가역적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사전적 영향평가'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검토 과정의 형식적 구성으로 본다면 현행 검토제도는 평가 대상인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을 사전적 영향평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마치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영향평가를 하나로 결합한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평가는 분야별 평가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각종 분야별 평가·조사제도들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는 - ‘정책·계획 간 조정과 조율’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 제도 간 중복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 3-1〉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주요 평가제도

환경	경제/개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영향평가 · 사전재해영향성평가 · 자연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영향평가 · 국토계획평가 · 규제영향분석 · 균형발전영향평가 · 예비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영향평가 · 고용영향평가 · 문화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 아동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지속위의 검토제도의 기본 취지는 분야별 행정계획과 정책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²³⁾ 및 국가 기본계획²⁴⁾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지속위 검토제도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주요 정책과 상위 행정계획을 조정·조율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미 다양한 분야별 평가·검토제도들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별 행정계획·정책’과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국가기본계획’의 조화는 기존의 분야별 영향평가 방식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 제50조

24) 지속가능발전법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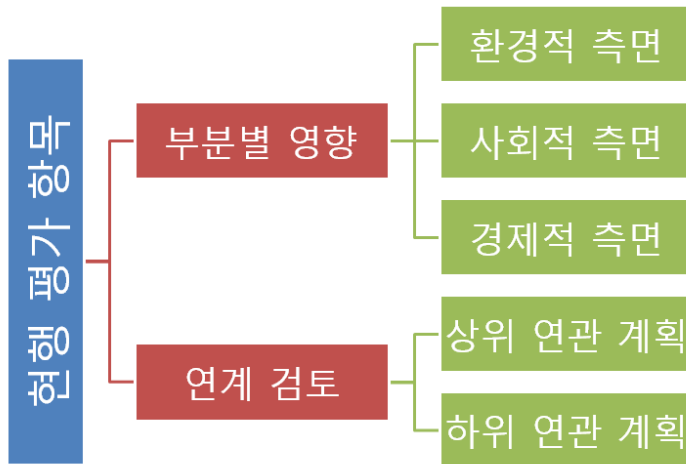
2.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과 일관성

현행 지속위 검토제도의 모태가 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제11조제2항을 통해 지속위 검토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개정되면서 현재 해당 조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 그 내용을 지속위에 통보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지속위 검토제도 관련 조항의 변천
<p>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최초 도입, 2002.6.3. 개정)</p> <p>☞ 제11조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2003.6.25. 개정)</p> <p>☞ 제2조 제1호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 제11조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07.8.3. 제정)</p> <p>☞ 제11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지속가능발전법(2010.1.13. 개정)</p> <p>☞ 제11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위 검토기능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은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현재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의 명확한 연계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속위 검토제도하에서는 통보된 법령이나 계획이 기본계획 및 해당 분야 이행계획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평가기준이 없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성되는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의하여 평가되며, 그 평가결과는 향후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 및 정책방향 도출에 활용된다.²⁵⁾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속위 검토 과정에서 통보된 법령·계획과 기본계획·이행계획 간 일관성이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법의 목적이 평가기준 구성에 충실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8a)

〈그림 3-1〉 현행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25)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3. 2030의제 및 SDG 반영

2015년에 채택된 2030의제는 모든 회원국이 의제의 전반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가능한 조속한 시점에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개발계획이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같은 각 국가의 주요 정책·계획에 의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함께 채택된 SDGs 달성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의제에서 제시된 지구적 목표 수준을 참고하여 국가 여건과 상황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각 국은 국가 발전전략과 분야별 정책·계획 등에 SDGs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자국의 여건, 능력, 개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 사회, 환경 분야별 정책이나 계획이 지속가능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²⁶⁾

또한 2030의제는 회원국들이 국가(지방 포함)의 SDGs 이행 성과에 대해 ‘주기적이고 포용적인 검토’(regular and inclusive review)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30의제에 요구하는 ‘후속조치 및 검토’(follow-up and review)의 핵심 내용은 SDG를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수단’(MoIs: Means of Implementations)을 포함한 SDG 이행 성과를 측정하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성공 요소 등을 장기 SDG 이행전략의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때 성과의 측정은 경제, 사회, 환경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측면과의 상호연계성(interlinkages)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제는 후속조치 및 검토 과정이 각국의 기존 관련 제도나 절차 위에 설립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중복과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26) “Each government will also decide how these aspirational and global targets should be incorporated in national planning processes, policies and strategies.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link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other relevant ongoing processes in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ields.” (2030 Agenda)

Opening statement	• 검토의 핵심 메시지; 지속가능발전 이행 상의 심각한 이슈
Summary	• 검토 내용 요약; 우수 사례; 도전 요소; 필요한 지원
Introduction	• 검토의 목적; 국가 여건
Methodology and process for preparation of the review	• 검토에 적용된 방법론; 범위; 한계점; 정부 및 의회 참여 범위
Policy and enabling environment	• 국가 정책에 SDGs 반영; 환경-경제-사회 통합; 모든 SDGs 현황/상태;
Means of implementation	• 이행 수단(Mols)의 활용; 추가 필요 자원, 능력, 기술, 파트너십
Next steps	• "이제" 이행 제고를 위한 노력
Statistical annex	• IAEG SDGs 지표 및 지역-국가 단위에서 추가된 지표
Conclusion	• 분석 요약; 정책적 함의; 개선점;

자료: HLPF(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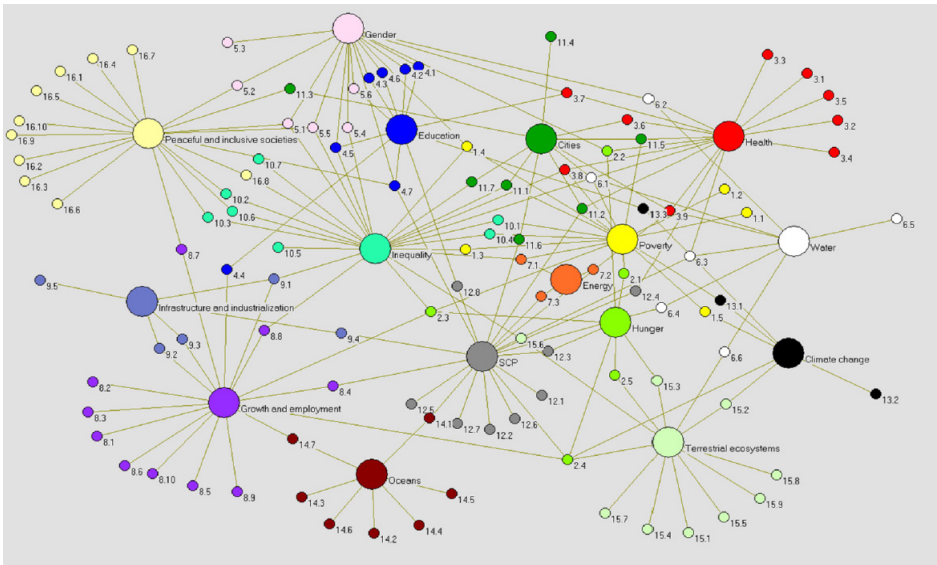
〈그림 3-2〉 UN HLPF의 '자발적 국가리뷰'(VNR)의 이행 검토 사항 예시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지속위 지속가능성 검토가 2030의제의 이행과 SDGs 달성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주요 정책에 환경, 사회 및 경제 지속가능발전 세 측면이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상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유일하며, 이는 또한 '기존 관련 제도나 절차'의 활용을 권고하는 2030의제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4. 정책 정합성 평가 필요

2030의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정합성 제고 및 관련 여건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수단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SDG 17은 그 14번째 세부목표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정합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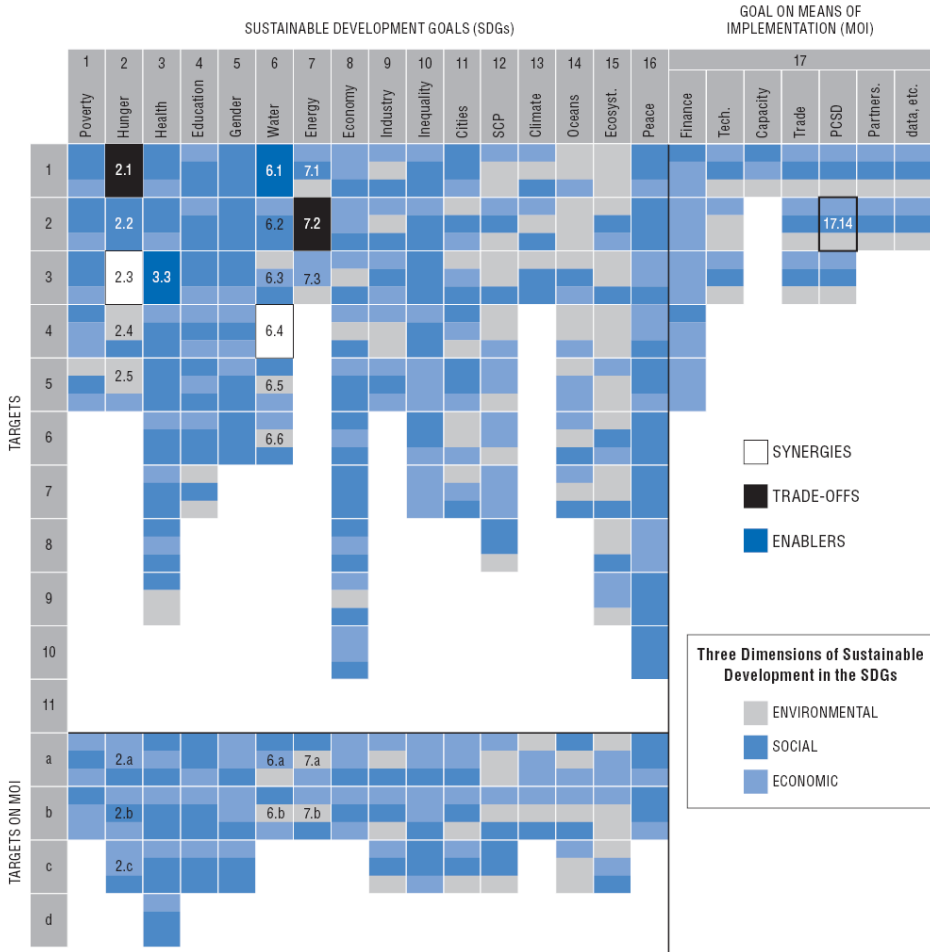
국제협력 분야에서 정책 정합성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온 OECD는 정책 정합성을 “모든 국내 및 국제적 정책입안 단계에서 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 측면을 통합하는 접근이나 정책 도구”로 정의하고 있다.²⁷⁾ SDG 측면에서 정책 정합성은 수평적 정합성(horizontal coherence)과 수직적 정합성(vertical coherence)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수평적 정합성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정책 간 정합성을 의미하는 반면 수직적 정합성은 지방과 국가, 국내와 국제 정책 간 정합성을 의미한다.



자료: Le Blanc(2015)

〈그림 3-3〉 UN DESA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간 상호연계성 분석 예시

27) OECD(2016a)



자료: OECD(2016a)

〈그림 3-4〉 SDG 체계에서 목표 간 상호연계성 사례

위의 두 그림은 서로 다른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간에 존재하는 복잡한 시너지, 상충 혹은 의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른 분야 목표와의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단위에서 분야별 정책이나 계획 수립 시 이러한 분야 혹은 목표 간 상호연계성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해당 정책·계획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해외 사례: 핀란드 입법평가위원회

핀란드의 입법 과정에는 ‘입법평가위원회’를 통해 경제, 환경, 사회 등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정부 제안서에 포함되는 영향평가의 질적 제고가 그 목적인데, 위원회가 직접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필요 시 추가적 평가를 제안한다.²⁸⁾

핀란드의 장기 지속가능발전 전략체계의 일환으로 2015년 설립이 결정된 ‘입법평가위원회’(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는 지난 2016년 4월 첫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고 의장과 2명의 부의장, 그리고 최대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장과 위원은 의회에서 임명되고 2명의 부의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선출된다.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총리실과 협력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²⁹⁾

- 정부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 여타 정부 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 입법과정의 질적 제고(특히, 영향평가 및 관련 활동의 개선 등)를 위한 이니셔티브
- 입법의 효과가 예상된 대로 나타나는지를 평가
- 여러 영향평가의 개발 상황 모니터링 및 관련 활동의 유효성 평가
- 연간 활동보고서를 총리실에 제공

평가위원회의 초기 검토는 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경제, 환경, 사회 등 지속가능발전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위원회는 평가 대상 정부 제안서를 독립적으로 선정 하는데, 2016 연차보고서(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 2017)에 따르면, 2016년 일 년 동안 총 12개 평가의견서가 작성되었다.

28) 핀란드 입법평가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음. 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 검색일: 2017.11.28.

29) 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2017a)



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

Lausunto Dnro: VNK/1928/32/2017

9.11.2017

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n lausunto luonnoksesta hallituksen esitykseksi eduskunnalle kiinteistönmuodostamislain, kiinteistörekisterilain sekä maankäyttö- ja rakennuslain muuttamisesta asemakaava-alueen kolmiulotteisesta kiinteistönmuodostamisesta säätämiseksi

Hallituksen esitysluonnoksessa on käsitelty asian taustaa, nykytilaa ja tavoitteita. Esitysluonnoksessa on asianmukaisesti kuvattu eri vaihtoehtoja toteuttaa esityksen tavoitteet ja valittu vaihtoehto on myös perusteltu. Lainmuutoksen kohteet käyvät ilmi yleisellä tasolla. On myönteistä, että esitysluonnoksessa on arvioitu numeerisesti, kuinka monta 3D-kiinteistöä vuosittain rakennettaisiin. Esitysluonnoksessa on perusteltu pääsääntöisesti riittävällä tavalla laadullisia hyötyjä ja kustannuksia sekä vaikutusmekanismeja, mutta vaikutusten suuruusluokka tulisi käydä ilmi esitysluonnoksesta.

Esitysluonnoksen keskeisimmät puutteet ja kehittämiskohteet ovat:

- 1) Yritysvaikutuksia on arvioitu pääosin monipuolisesti, mutta kuvauksessa on puutteita. Esitysluonnoksessa tulisi kuvata tarkemmin niitä yrityksiä, joita esitys erityisesti koskee. Luonnoksessa tulisi käsitellä esimerkiksi, missä määrin rakennusteollisuuden investoinnit tai työllisyys voisivat lisääntyä paikallisesti. Lisäksi tulisi käydä ilmi, nopeutuisiko rakentamisprosessi kokonaisuutena.
- 2) Vaikutuksia kiinteistön omistajiin on kuvattu yleisellä tasolla kattavasti. Esitysluonnoksessa tulisi kuitenkin kuvata tarkemmin niitä kohderyhmiä, joita kiinteistöveron ja kiinteistöjen arvon muutos koskee sekä muutoksen suuruusluokkaa. Lisäksi 3D-kiinteistössä asunto-osakeyhtiön osakkeenomistajan asema jää osittain epäselväksi.
- 3) Esitysluonnoksen perusteella jää usein epäselväksi, mihin vaikutusarviot perustuvat.

Arviointineuvosto suosittelee, että puutteet esitysluonnoksessa korjataan ennen hallituksen esityksen antamista.

1 Hallituksen esitysluonnoksen keskeinen sisält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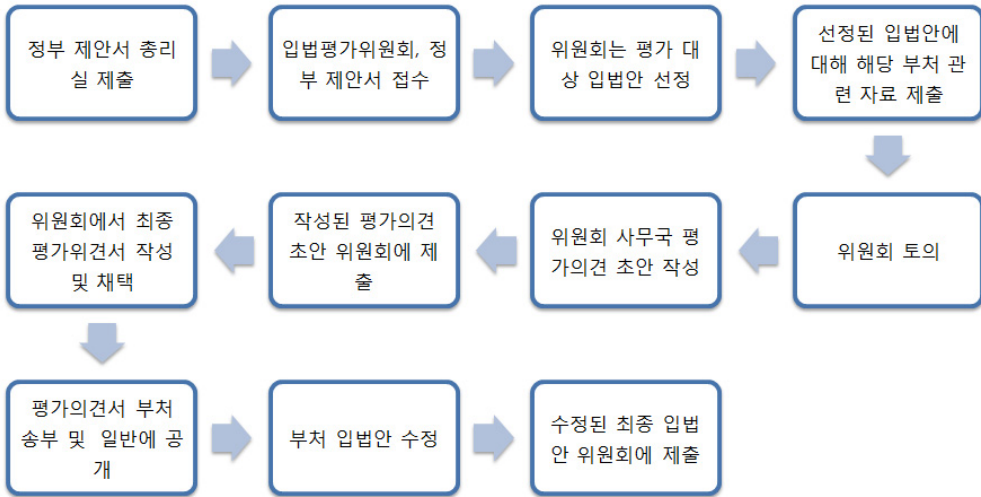
Esityksessä ehdotetaan muutettavaksi kiinteistönmuodostamislakia, kiinteistörekisterilakia sekä maankäyttö- ja rakennuslakia siten, että mahdollistettaisiin uuden kolmiulotteisesti määritellyn kiinteistörekisteriyksikön eli kolmiulotteisen kiinteistön muodostaminen maanpinnan ala- ja yläpuoliseen tilaan asemakaava-alueella. Tavoitteena on yksinkertaistaa ja joustavoittaa asemakaava-alueen suurten ja monitasoisten rakennushankkeiden toteuttamista mahdollistamalla kiinteistöjen jakaminen myös korkeussuunnassa.

Kiinteistönmuodostaminen tapahtuisi kuten nykyisin lohkamalla tai halkomalla. Kiinteistönmuodostamista koskeva toimitus kohdistuisi kolmiulotteista kiinteistöä ensimmäisen kerran alueelle muo-

자료: 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2017b)

〈그림 3-5〉 핀란드 입법평가위원회 평가의견서 샘플

정부 제안서는 우선 총리실에 제출되고, 이 중에서 평가 대상 제안서를 위원회가 선정한다. 위원회 선정과 동시에 해당 부처에 해당 사항이 통보되며, 해당 부처는 전체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 전체 제안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4주 이내에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처에 송부한다. 단계별 전체 위원회 평가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6〉 핀란드 입법평가위원회 정부 제안서 평가 절차

정부 웹사이트에는 위원회 평가 대상 정부 제안서 목록이 게시되며, 이후 위원회의 평가 의견이 작성되면 이 사이트에 게시되고 보도자료와 함께 일반에 공개된다. 위원회의 평가 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³⁰⁾

- 정부 제안서의 초안의 주요 내용(Hallituksen esitysluonnoksen keskeinen sisältö)
- 일반적 사항(Yleiset huomiot)
- 경제적 영향(Taloudelliset vaikutukset)
 - 가계, 기업 등 자산 소유자에 미치는 영향(Vaikutukset kiinteistönomistajiin)

30) 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2017b).

(kotitaloudet ja yritykset)

-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Vaikutukset yrityksiin)
-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Vaikutukset julkiselle taloudelle)
-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Vaikutukset viranomaisten toimintaan)
- 환경적 영향(Ympäristövaikutukset)
- 사회적 영향(Yhteiskunnalliset vaikutukset)
- 기타 사항(Muut asiat)

최근 평가에 따르면 입법평가 제도는 핀란드 정부 내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핀란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³¹⁾

31) 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2017b).

제4장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1. 기본구조

본 연구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지속위 위상 강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성 검토제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검토 방식

우선 검토방식을 ‘환경, 경제, 사회 부문별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전체 국가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현재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나 검토 제도와의 중복이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한편, 강화된 위상의 지속위에 요구되는 ‘정책 통합 및 조율’ 기능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체계 적용범위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범위는 법령의 제·개정과 함께 현재 71개로 정해져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에 환경, 사회, 경제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전략, 정책 및 행정계획을 추가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검토 대상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검토에 사용할 평가기준

정책·계획의 검토·심의 과정에 적용할 평가기준은 기존 환경·사회·경제 세 영역으로

구분된 영향평가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과의 일관성’,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서의 유효성’, 그리고 ‘국내외 관련 정책 사항들과의 정합성’을 포함하는 최상위 지속가능성 검토에 걸맞은 포괄적 범위로 구성되었다.



〈그림 4-1〉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에서 정책·계획 평가의 역할 정의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는 크게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기본계획 수립, 분야별 이행계획 수립,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및 분야별 이행성과 평가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부문별 정책·계획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목표·이행과제, 그리고 타 부문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는 바로 이 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2.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범위

가. 대상 정책·계획 범위 설정

1) SDG 분야별 국내 정책·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체계의 적용범위는 앞서 설명한 평가체계의 목적에 상응하도록 국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과 계획을 모두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설정되었다.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검토 대상으로 지정된 기존 중·장기계획과 함께 환경적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계획, 그리고 그 영향이 구체적이지 않아 검토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통상적인 부문별 정책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부문별 국가전략
-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의 제·개정
- 환경, 경제, 사회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정책 및 계획

평가대상 중에서 그 수립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계획 및 전략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위 위상 조정과 이에 따른 관련 법의 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목록을 아래와 같이 예시로 제시한다. 이 목록은 기존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71개 중·장기 행정계획에 사회, 경제·재정,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 분야 관련 전략 및 계획을 새롭게 추가하여 작성되었다.

이들 분야는 직접적인 물리적인 환경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서는 검토 대상 계획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평가체계는 환경에 초점을 맞춘 영향평가 방식 보다는 전체 국가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그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식의 검토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리적 환경영향이 미미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검토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검토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킬 계획을 선정하기 위해 하여 17개 SDGs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국내 전략, 계획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³²⁾

32) 2030의제 이행과제를 분석한 김호석 외(2015)를 참고하였음.

〈표 4-1〉 SDG 목표별 국내 관련 전략, 계획

목표	분야별 관련 전략, 계획
1 빈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2 기아, 식량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지역발전5개년계획
3 건강, 웰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환경보건종합계획
4 교육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산림복지종합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창조경제실현계획
5 양성평등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6 수질, 위생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지역발전5개년계획
7 에너지	사회보장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8 고용, 성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대·중소기업동반성장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산재예방5개년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창조경제실현계획
9 산업, 혁신, 인프라	국토종합계획,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지역발전5개년계획, 창조경제실현계획
10 불평등 해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1 지속가능한 도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산림복지종합계획,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사회보장기본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지역발전5개년계획, 지자체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표 4-1〉의 계속

목표	분야별 관련 전략, 계획
12 책임 소비·생산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국가환경종합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13 기후변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녹색건축물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창조경제실현계획
14 해양·육수 행태계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15 육상생태계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16 평화, 정의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17 국제협력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녹색성장5개년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2) 검토 대상 정책·계획(안)

17개 SDGs 중심으로 도출된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계획 중에서 현행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에서 검토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새롭게 추가할 것을 제안하는 계획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 공공외교법 제6조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
-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 기본계획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 폐기물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폐기물관리종합계획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에 따른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
-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중소기업동반성장 기본 계획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 기본계획
-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물재이용 기본계획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종합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계획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에 따른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
-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 기본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 기본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

3. 정책·계획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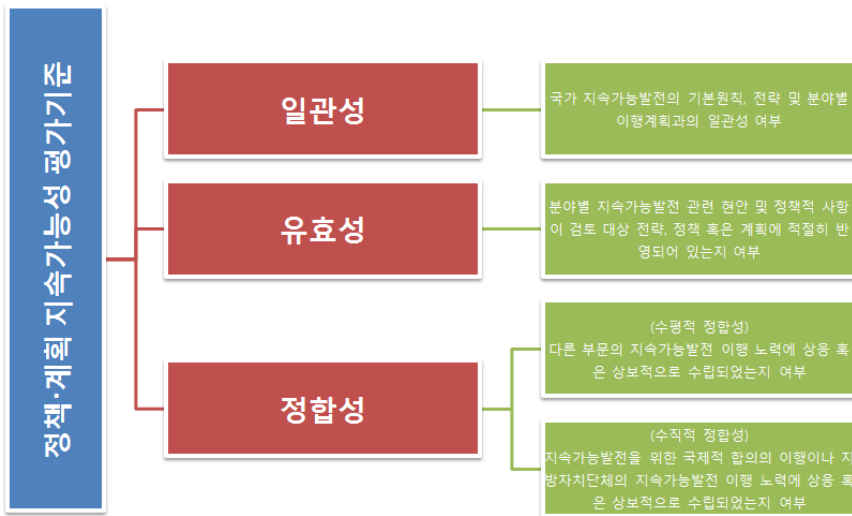
2008년 지속가능발전법 제정에 따라 강화된 지속위의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에 활용하기 위해 PCSD(2008)는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들로 구성된 검토표를 개발·제시하였다.

〈표 4-2〉 법령 및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표

항목		작성내용
계획명		· 작성 대상 계획의 명칭
계획의 목표		· 작성 대상 계획의 핵심 목표를 간략하게 기술
계획의 내용		· 작성 대상 계획의 주요 내용을 기술
계획의 부문		· 계획과 관련된 부문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검토할 경우 해당 부문을 기술
지속가능성 관점의 검토		· 해당 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점에 대한 검토를 환경, 경제 사회 세 부문으로 구분함. 이 경우 세 부문 간의 균형과 조화, 세대 간 문제, 통합적 측면에 대한 검토 기준은 해당 부문에서 검토 기준으로 제시함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세부 검토 사항	환경적 측면 검토항목	· '계획의 부문'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하여 환경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해당 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항목을 기술함
	경제적 측면 검토항목	· '계획의 부문'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해당 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항목을 기술함
	사회적 측면 검토항목	· '계획의 부문'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배제)이 해당 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항목을 기술함
연계 검토	상위 연관 계획	· 관련 법체계를 참조하여 계획의 상위 연관 계획들을 서술함
	하위 연관 계획	· 관련 법체계를 참조하여 계획의 하위 연관 계획들을 서술함

자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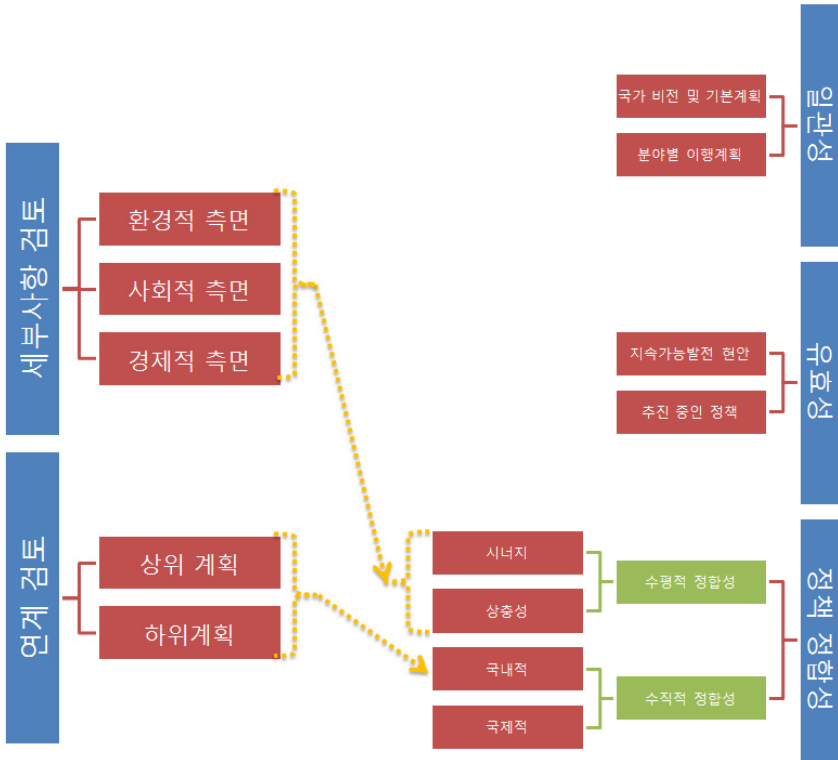
〈표 8〉의 검토표 구성을 보면, 검토 대상 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환경·경제·사회 세 측면으로 구분된 검토항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8a)는 대상 계획마다 검토항목별로 세분화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체크리스트법’(checklist method) 기반의 영향평가 방식으로 검토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검토표 개발 이후 도입된 다양한 분야별 평가·검토제도나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와의 관계 및 역할 분담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4-2〉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검토를 위한 평가기준

본 연구는 전체 국가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 분야별 정책·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정책·계획의 지속가능성이 기존 ‘영향평가’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성 보증’(sustainability assurance)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네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① (일관성) 검토 대상 정책·계획이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비전, 기본전략 및 분야별 이행 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
- ② (유효성) 검토 대상 정책·계획이 해당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현안 및 정책적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
- ③ (수평적 정합성) 검토 대상 정책·계획이 다른 부문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노력에 상응 혹은 상보적인지를 판단
- ④ (수직적 정합성) 검토 대상 정책·계획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합의 이행이나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이행 노력에 상응 혹은 상보적인지를 판단



〈그림 4-3〉 기존 검토항목과 새로운 평가기준 비교

나. 국가 지속가능발전 일관성

분야별 정책·계획은 그 근거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되기 때문에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이나 분야별 이행과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정책 통합’이나 ‘지속가능발전의 주류화’ 등은 모두 분야별 정책이나 행동이 국가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책·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에 있어서 가장 먼저 평가해야 할 요소는 그것이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분야별 이행계획과의 일관성이다. 이를 검토의 평가기준으로 포함 시킴으로써 분야별 정책·계획이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가 전체 및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이행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책·계획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일관성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 지속가능발전 일관성 평가항목 및 기준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의 일관성	관련 국가 기본계획	· 검토 대상 정책·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일관성 여부에 대한 기술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이 관련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과의 일관성 여부
분야별 이행과제와의 일관성	해당 부문	· 검토 대상 정책·계획 해당 부처·기관
	해당 부문 이행과제	· 상기 부처·기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정책·계획 목적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수립·변경 목적 및 주요 내용
	일관성 여부에 대한 기술	· 검토 대상 정책·계획과 해당 부처·기관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와의 일관성 여부

다. 지속가능발전 정책 유효성

정책·계획은 통상 그 배경이 되는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맥락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해당 부문의 지속가능발전 현안이나 추진 중인 정책과 껍이 존재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이나 계획이 해당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그 수립과정에서 해당 부문의 현안이나 진행 중인 여타 정책적 사항들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접근)

‘지속가능발전 정책 유효성’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 대상 정책·계획이 해당 부문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평가한다.

정책·계획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발전 정책 유효성 평가항목 및 기준		
정책·계획의 목적과 범위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수립·변경 목적
	시간적 범위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공간적 범위
지속가능발전 정책 유효성	관련된 국내 현안 해소에 대한 기여도	· 검토 대상 정책·계획 관련 국내 현안 · 해당 현안의 해소에 기여하는 정도
	진행 중인 관련 정책적 노력과의 연관성	· 대상 정책 혹은 계획 관련 국제적 현안 · 국제적 현안 해소 측면에서의 연관성 및 예상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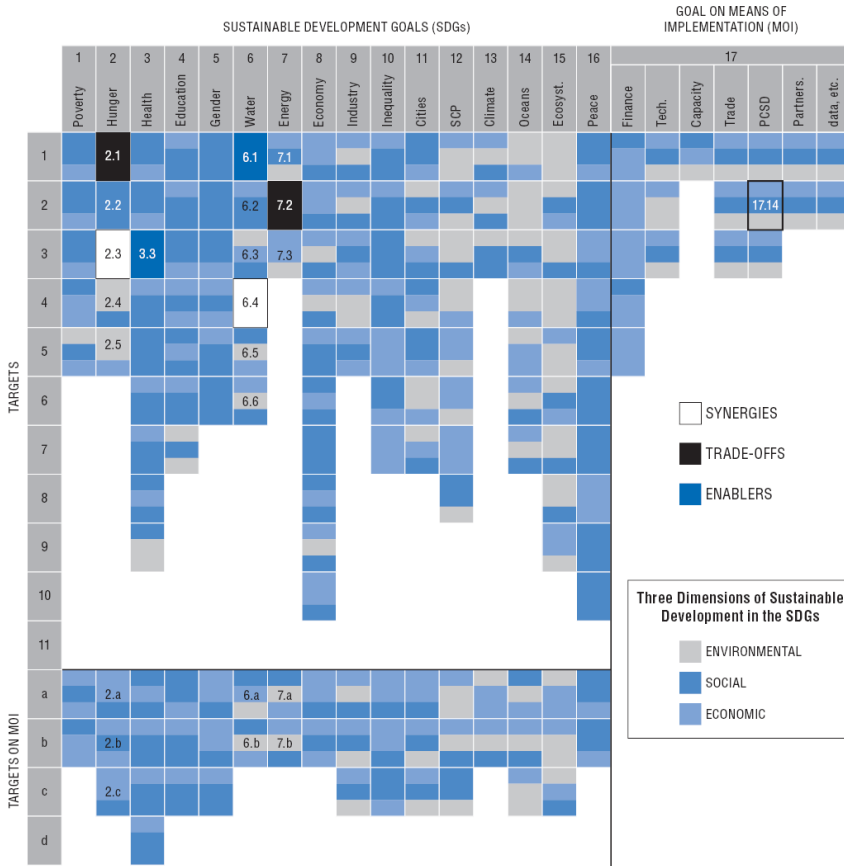
라. 정책 정합성(policy coherence)

정책 정합성의 향상은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한 필요조건인 동시에 2030의제 이행을 위해 선정된 SDGs 중 하나다. SDG 17은 의제 이행수단(MoIs)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구적 협력 강화에 관한 목표인데, 17.14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정합성 향상'을 별도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 정합성의 평가에 대해 OECD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³³⁾

- 관련 부문 범위
 - 관련된, 영향받는 주체의 범위(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주요 이해당사자인 정부·기업·민간 의사결정자)
 -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 정합성 노력에 다른 국가와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었는지?
- 정책 간 상호연계성
 - 경제, 사회, 환경 정책 간 상호연계성(시너지와 상충)이 고려되었는가?
 - 계획된 정책의 결과는 SDGs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 한 부문에서의 SDG 달성 노력은 다른 SDG 달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국가 및 세대 간 영향
 - 대상 정책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부정적 영향은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가?
 - 미래 세대의 삶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장기적 영향이 식별되었는가?
- 정책 우선순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우선순위가 SDG 비전에 부합하는가?
 - SDGs에 부합하는 국가 및 부문별 전략이 수립되고 있는가?

33) OECD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정합성' 스크리닝 체크리스트 중에서 정책·계획의 수직적 정합성 평가와 관련된 요소를 발췌하였음. 전체 체크리스트는 OECD(2016a) 참고.



자료: OECD(2016a)

〈그림 4-4〉 SDG 체계에서의 수평적 정합성 사례: 물-에너지-식량

위 표는 17개 SDG와 169개 세부목표들의 환경-경제-사회 부문별 분포와 함께 목표 간 발생할 수 있는 '시너지'(synergies), '상충'(trade-offs), '지원'(enablers) 등 세 유형의 연관성을 물-에너지-식량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물 이용 효율성'에 관한 세부목표 6.4는 '농업 생산성' 세부목표인 2.3과 시너지 관계에 있다. 반면 일부 식량자원이 재생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아 근절'을 위한 세부목표 2.1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에 관한 세부목표인 7.2와 상충관계에 있다.

1) 수평적 정합성

2030의제는 지속가능발전이 분야별 목표 간 상호연계성(inter-linkages)을 고려한 통합적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함으로 지적하고 있다.

분야별 정책·계획은 그 고유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기 때문에 상호연계성을 통해 타 분야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수평적 정합성은 상호 연계된 분야 간 정책적 노력이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상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계획의 지속가능성, 특히 SDGs 개념을 반영한 검토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평가요소이다.

정책·계획의 수평적 정합성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평적 정합성 평가항목 및 기준		
정책·계획의 목적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수립·변경 목적
상호연계성 식별	시너지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수립·변경을 통해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 및 목표
	상충성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수립·변경을 통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 및 목표
상호연계성 반영	시너지 확대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조정을 통한 긍정적 영향 확대 잠재력
	상충성 완화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조정을 통한 부정적 영향 완화 잠재력
	실현 가능성	· 수평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검토 대상 정책 혹은 계획 조정의 현실성

2) 수직적 정합성

수직적 정합성은 국가의 정책·계획이 ‘지구적, 지역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합의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노력’과 상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SDG 17.14를 반영한 평가기준 범주이다.

현행 분야별 정책·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나 지자체 이행노력을 고려하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2030의제와 파리 합의처럼 국내적 영향이 큰 국제적 합의들이 체결되고 있고, 이것이 분야별 정책에 중요한 기회 혹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책·계획 수립 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평가체계에서 정책·계획의 수직적 정합성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평가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직적 정책 정합성 평가항목 및 기준		
정책·계획의 목적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수립·변경 목적
지자체 이행 노력과의 정합성	지역적 범위 식별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지역적 범위와 관련 지자체
	정합성 판단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이 관련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노력과의 정합성 여부
국제적 합의 이행과의 정합성	관련 합의·협약	· 검토 대상 정책·계획과 관련된 국제 합의·협약
	국내 이행 수준	· 상기 국제적 합의·협약의 국내 이행·달성 수준 · 상기 국제적 합의·협약의 이행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계획
	정합성 판단	· 검토 대상 정책·계획이 상기 국제 합의·협약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2002년 개정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주요 정책, 계획 심의 기능은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라는 「의제21」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부문별 정책·계획이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립·변경되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이 기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으로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제도’로 자리 잡았으나,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고 지속위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조정되면서 그 제도적 실효성이 위축되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촉진 및 2030의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속위 위상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 계획이 실천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지속위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 전략과 관련 정책·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법령·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여 지속위 검토 기능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현행 지속위 검토제도는 법령의 제·개정 및 71개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출된 법령 혹은 계획에 대해 그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속위의 위상 강화 외에도 이 검토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한 이유가 되는 운영상의 이슈와 대내외적 여건 변화가 있었다: ① 각종 분야별 평가의 도입에 따른 ‘영향평가’ 방식 검토의 한계, ② 해당 부문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의 일관성 평가기준 추가 필요, ③ 2030의제 및 SDGs 관련 사항의

반영, ④ 지속가능발전 분야 간 상호연계성과 정책 정합성 평가기준 추가 필요.

본 연구는 향후 예정된 지속위 위상 강화와 현행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검토제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개발·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지속가능발전 제 측면에서의 적합성을 점검·확인하는 ‘지속가능성 보증’ 방식으로의 검토 방식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현재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유사 검토·평가와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줄임으로써 지속위의 ‘정책 통합 및 조율’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위의 정책·계획의 심의를 위한 검토에 적용할 평가기준으로 다음과 네 범주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①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과의 ‘일관성’(consistency), ② 중·장기적 전망 하에서 수립·변경되는 정책·계획이 사회적, 정책적, 국제적 현안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정책 유효성’(policy effectiveness), ③ 정책·계획이 상호 연계성(inter-linkages)을 따라 타 부문의 지속가능발전과 상충 혹은 시너지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평적 정책 정합성’(horizontal policy coherence), 그리고 ④ 부문별 정책·계획이 관련 국제적 합의나 협약 혹은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수직적 정책 정합성’(vertical policy coherence)

부문별 정책적 노력이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 이행 단위라는 점에서 지속위의 정책·계획 검토 기능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제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목표들이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2030의제 및 SDGs 맥락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서 지속위의 정책 조정·조율 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가 이러한 지속위의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고용영향평가센터, '고용영향평가 소개', <http://www.kli.re.kr/eia>, 검색일: 2017.11.23.
- 광명시민인권센터(2017.9.19), 「광명시 인권영향평가 성과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시행령', <http://www.law.go.kr/>, 검색일: 2017.11.24.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http://www.law.go.kr/>, 검색일: 2017.11.23.
-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기본법 시행령', <http://www.law.go.kr/>, 검색일: 2017.11.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http://www.law.go.kr/>, 검색일: 2017.11.24.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보전', <http://www.law.go.kr/>, 검색일: 2017.11.23.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http://www.law.go.kr/>, 검색일: 2017.11.23.
- 김호석 외(2015), 「Post-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 대통령비서실 보도자료 (1993.3.21), “김대통령, 환경복지구상 발표”
- 대한민국(1996), 「유엔환경개발회의 의제21 국가실천계획」.
- 박기령(201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영향 평가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변세일(2008),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1),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분야별 작업지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2),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사전검토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6), “국가 중장기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제도 개요”, <http://pcsd.pa.go.kr/board/read.php?db=bbs40&uid=1&page=1&keyfield=&key=&skin=print>, 검색일: 2017.9.1.
-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8a), 「법령 및 중장기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방안 연구」.
-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8b),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통합의 상생」.
-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2),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사전검토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부(1996), “환경의 날 추진현황 보고”, 국무회의보고자료.

환경부(2016),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건강영향평가’, <https://www.eiass.go.kr/sys/main/>, 검색일: 2017.11.23.

[국외문헌]

HLPF (2017), *Compilation of the Main Messages from the 2017 VNR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7035Compilation_of_Main_Messages_from_2017_VNRs.pdf

Hyytinen, A. and A. Moisio(2017), 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 – lainvalmistelun vaikutusarviointia. *Kansantaloudellinen Aikakauskirja*, 113, 206-212.

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2017a), *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n vuosikatsaus 2016*.

Lainsäädännön arviointineuvosto(2017b), *Lausunto luonnoksesta hallituksen esitykseksi kiinteistönmuodostamislaista*. Retrieved from <http://vnk.fi/arviointineuvosto/lausunnot>

Le Blanc, D(2015), *Towards Integration at Las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a Network of Targets* (DESA Working Paper No. 141).

OECD(2001), *The DAC Guidelines: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uidan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OECD(2006), *Good Practices in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of OECD Countries*.

OECD(2010), *Guidance on Sustainability Assessment*.

OECD(2015),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SDG Framework*.

OECD(2016a), *Better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6. A New Framework for Policy Coherence*.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ttps://doi.org/DOI>: <http://dx.doi.org/10.1787/9789264256996-en>

OECD(2016b), *The Framework for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P(2004), *Integrated Assessment and Plan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ESA(2002), *Guidance in Preparing a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Manag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New Millennium*.

UN DESA(2015), *Policy integration in government in pursui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2012), *The Future We Want*.

UNEP(2009), *Integrated Assessment: Mainstreaming Sustainability into Policy Making*.

UNEP(2009), *Integrated Policymak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trieved from, http://www.unep.ch/etb/publications/IPSD_manual/UNEP_IPSD_final.pdf

Abstract

Developing a Sustainability Assessment Framework for National Policies and Plans

Kim Ho-seok, et al.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had been established in 2000 to support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s recommended by Agenda 21. ‘The Sustainability Review Process for laws and medium- and long-term plans’ was first introduced when the Regulations on 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was revised in 2002.

The review process was one of the core functions of the PCSD, particularly strengthen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7, but its effectiveness has decreased sharply since the period of Green Growth when the Commission’s institutional status was adjusted to a commission under the Minister of Environmen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unveiled its five-year policy agenda in July 2017, which includes the restructur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ance and the institutional status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NCSO) as one of its 100 policy tasks to accomplish over the next five years. It also includes a plan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Commission by making the sustainability review for national strategies and sectoral policies and plans mandatory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view Process.

The Sustainability Review Process, which currently applies to the laws and 71 medium- and long-term national plans in the establishment or amendment, assesses potential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rovides the results to the government department or agency. In line with the planned change of its institutional status, the Commission has strong reasons to reshape the current review process: i) the existence of various sectoral impact assessments or processes which weaken the rationale for the current assessment-style sustainability review process, ii) the need to adjust existing criteria to ensure consistency with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iii) the need to include criteria which help to implement the 2030 Agenda, especially regarding follow up and review at the national level, and iv) the need to incorporate criteria that can consider the interlinkages between different goals and assess policy coherence.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sustainability review process by developing a new set of criteria categorized in three themes of consistency, effectiveness and coherence, which respond to the needs listed above. We suggest that the current review process would need to make a transition to the process of ‘sustainability assurance’ for national policies and plans, so that the process can enhance its role in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different sectoral actions, avoiding any possible administrative inefficiencies with respect to relevant sectoral assessments or processes.

Key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SDGs, Policy Coherence, Sustainability Assessment

■ 저자약력

김호석 (연구책임)

연세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E-mail: hoskim@kei.re.kr

주요 연구실적

Post-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
Universality, Integration, an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RI, 2016)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the Water-Food-Energy Nexus (KEI, 2015)

김종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kjongho@kei.re.kr

조을생

미국 Polytechnic University 토목환경공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E-mail: escho@kei.re.kr